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제1장 개요

I. 총괄	3
II.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4
1. 세입결산	4
2. 세출결산	6
3. 예비비 지출	16
III. 통합재무제표	17
1. 재정상태표	17
2. 재정운영표	19
3. 순자산변동표	21
IV. 성과보고서	23
1. 성과체계	23
2. 2025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4

제2장 검토의견

1.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의
규모·대상 재검토 및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26
2.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에 대한 주의 필요 33

3.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비의 기본경비성 경비 집행 주의 필요	39
4.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 내실화 필요	44
5.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플랫폼 활용도 제고 필요	53

제1장 개요

I. 총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589억 400만원(387.5%) 증가한 1,999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75억 4,800만원(517.7%)이 증가함.

○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3억 9,700만원(△0.6%) 감소한 656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000만원(0.9%)이 증가함.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현액 (A)	결산액 (B)	집행률 (B/A)		
□ 세입결산	41,010	199,914	487.5	32,366	517.7
○ 일반회계	41,010	199,914	487.5	32,366	517.7
□ 세출결산	66,030	65,633	99.4	65,063	0.9
○ 일반회계	66,030	65,633	99.4	65,063	0.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I.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10억 1,000만원이며, 결산은 2,034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99억 1,400만원(예산 현액 대비 487.5%)을 수납하고, 34억 2,200만원은 미수납됨.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기타재산 이자수입	64	300	300	100	-	-
과태료	790	1,166	459	39.4	632	75
과징금	38,800	199,992	197,220	98.6	2,731	41
위약금	1	-	-	-	-	-
가산금	23	69	6	8.7	59	4
기타경상 이전수입	1,330	1,930	1,930	100	-	-
면허료 및 수수료	1	-	-	-	-	-
기타잡수입	1	-	-	-	-	-
계	41,010	203,457	199,914	98.3	3,422	12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연금 등 정산 잔액 반납에 따른 기타재산 이자수입 3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9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중 과태료 수입으로 4억 5,900만원, 과징금 1,972억 2,000만원, 가산금
600만원을 수납하였음.

- 미수납액 34억 2,200만원은 징수유예(20억 3,700만원), 납기미도래(4억
5,000만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 임의체납(9억 3,600만원)
에 따른 것임.

2. 세출결산

1) 총괄

□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60억 3,000만원으로, 결산은 이 중 99.4%에 해당하는 656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지출액 149억 3,000만원, 주요사업비 지출액 487억 1,100만원, 기본경비 19억 9,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이체	예비비				
합 계	64,548	65,844	-	±3,596	-	186	66,030	65,633	-	397
○ 인건비	14,592	14,592	-	372	-	-	14,964	14,930	-	34
○ 기본경비	2,408	2,408	-	40 △377	-	-	2,071	1,992	-	79
○ 사업비	47,548	48,844	-	3,183 △3,218	-	186	48,995	48,711	-	284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인건비

□ 2025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49억 6,400만원 중 99.8%인 149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0.2%인 3,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인건비 집행내역〉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인건비 합계	14,964	14,930	99.8	-	34
□ 보수(110-01)	14,224	14,212	99.9	-	12
□ 기타직보수(110-02)	635	632	99.5	-	3
□ 연가보상비(110-05)	105	86	81.9	-	1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기본경비

□ 2025회계연도 기본경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0억 7,100만원 중 96.2%인 19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8%인 7,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본경비 합계	2,071	1,992	96.2	-	79
□ 인건비(110)	11	11	100	-	-
□ 운영비(210)	1,284	1,253	97.6	-	31
□ 여비(220)	192	154	80.2	-	38
□ 업무추진비(240)	198	197	99.5	-	1
□ 직무수행경비(250)	258	252	97.7	-	6
□ 연구용역비(260)	40	40	100	-	-
□ 유형자산(430)	87	84	96.6	-	3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주요사업비

□ 2025회계연도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89억 9,500만원 중 99.4%인 48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0.6%인 2억 8,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8,995	48,711	99.4	-	284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1,938	1,936	99.9	-	2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714	3,669	98.8	-	45
개인정보 교육 지원	1,068	1,068	100	-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31	491	92.5	-	40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2,376	2,355	99.1	-	21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3,564	3,564	100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6,050	6,050	100	-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6,045	5,978	98.9	-	67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5,188	5,188	100	-	-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2,000	2,000	100	-	-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1,500	1,500	100	-	-
개인정보침해방지	8,846	8,811	99.6	-	35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1,596	1,555	97.4	-	41
위원회운영지원	2,026	1,995	98.5	-	31
위원회법무지원	510	508	99.6	-	2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2,043	2,042	99.9	-	1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 개선,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 분석, 개인정보보호 제도 인식 제고 및 성과 홍보·공유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주권을 보장·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 3,800만원 중 99.9%인 19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0.1%인 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은 민간분야 자율규제 촉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7억 1,400만원 중 98.8%인 36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인 4,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개인정보 교육 지원” 사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개인정보처리자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의 교육을 통해 업무수행 전문성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6,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3,100만원 중 92.5%인 4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7.5%인 4,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해외 감독기관 간 협력 등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이슈 대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억 7,600만원 중 99.1%인 23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0.9%인 2,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 운영 및 법·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5억 6,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연구 및 데이터, 전송방식, 보안·인증 등 상호 호환 가능한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0억 5,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하고 전 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0억 4,500만원 중 98.9%인 59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인 6,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사업은 데이터 혁신시대의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개인정보 침해예방 등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1억 8,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표준 개발을 통한 글로벌 개인정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개인정보 기술

생태계 조성, 표준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AI에 대응한 개인정보 특화 기술개발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안전 활용을 지원하여 신뢰 기반의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조사 및 실태 점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 고유식별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조치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8억 4,600만원 중 99.6%인 88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0.4%인 3,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은 개인정보 사고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도입·적용하여 조사결과의 법적 증거능력 확보 및 부정행위 식별 등 명확하고 원활한 사고 원인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9,600만원 중 97.4%인 15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인 4,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체 운영, 개인정보 보호 정책 연구 수행 및 포럼·세미나 활동 지원, 개인정보보호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2,600만원 중 98.5%인 19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인 3,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위원회법무지원” 사업은 국가송무수행지원, 법률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1,000만원 중 99.6%인 5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0.4%인 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위원회운영지원(정보화)” 사업은 위원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4,300만원 중 99.9%인 20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0.1%인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5) 프로그램별 지출내역

- ☐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프로그램(항) 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프로그램(항)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66,030	65,633	99.4	-	397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1000)	33,974	33,800	99.5	-	174
선제적인 개인정보 이슈 대응(2000)	10,442	10,366	99.3	-	76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7000)	21,614	21,467	99.3	-	147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 이·전용 내역

-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총 35억 9,600만원이며, 이는 사업계획 변경 및 인건비 부족액 충당 등의 사유임.

7) 이월 내역

-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없음.

8) 불용 내역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3억 9,7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2025회계연도 주요사업별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 인 건 비	14,964	34	0.2	- 집행잔액
○ 기 본 경 비	2,071	79	3.8	- 집행잔액
○ 주 요 사 업 비	48,995	284	0.6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1,938	2	0.1	- 집행잔액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714	45	1.2	- 집행잔액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31	40	7.5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2,376	21	0.9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6,045	67	1.1	- 집행잔액
개인정보침해방지	8,846	35	0.4	- 집행잔액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1,596	41	2.6	- 집행잔액
위원회운영지원	2,026	31	1.5	- 집행잔액
위원회법무지원	510	2	0.4	- 집행잔액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2,043	1	0.1	- 집행잔액
합 계	66,030	397		

3. 예비비 지출

□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억 8,6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 8,6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소스코드, 솔루션 등의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함에 따라 정보화시스템 복구를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 것임.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목적 예비비	개인정보침해방지	64	64	-	-
목적 예비비	위원회 정보화 지원	122	122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Ⅲ. 통합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산은 180억 7,500만원이고, 부채는 5,900만원이며, 순자산은 전년 대비 199억 6,600만원이 감소한 180억 1,6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금 액 (C=A-B)	비 율 (C/B)
자산합계(a)	18,075	38,036	△19,961	△52.5
Ⅰ. 금융자산	2,752	24,077	△21,325	△88.6
Ⅱ. 유·무형자산	15,323	13,959	1,364	9.8
Ⅲ. 기타자산	-	-	-	-
부채합계(b)	59	54	5	9.3
Ⅰ. 차입부채	-	-	-	-
Ⅱ. 충당부채	59	54	5	9.3
Ⅲ. 기타부채	-	-	-	-
순자산(a-b)	18,016	37,982	△19,966	△52.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산총액은 180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9억 6,100만원(Δ 52.5%)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미수채권 등 유동자산의 감소(Δ 213억 2,500만원)에 있음.
- 부채총액은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9.3%)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기타충당부채의 증가(500만원)에 있음.

2. 재정운영표

□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운영결과는 프로그램 순원가 419억 8,000만원 및 관리운영비 246억 2,300만원, 비배분비용 1억 5,800만원 등을 합산한 645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감	
			금액(C=A-B)	비율(C/B)
I. 프로그램 순원가	41,980	35,669	6,311	17.7
1. 프로그램 총원가	41,980	35,669	6,311	17.7
2.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24,623	23,495	1,128	4.8
III. 비배분비용	158	107	51	47.7
IV. 비배분수익	2,230	1,648	582	35.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4,531	57,623	6,908	12.0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4,531	57,623	6,908	12.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프로그램 순원가는 전년 대비 63억 1,100만원 증가한 419억 8,000만원이며, 이는 외주용역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관리운영비는 전년 대비 11억 2,800만원 증가한 246억 2,3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경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비배분비용은 전년 대비 5,100만원 증가한 1억 5,800만원이며, 이는
기타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비배분수익은 전년 대비 5억 8,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국가
운영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3. 순자산변동표

□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말순자산은 180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9억 6,600만원 감소하였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37,982	7,806	30,176	386.6
II. 재정운영결과	64,531	57,623	6,908	12.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4,565	87,799	△43,234	△49.2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I-II+III+IV)	18,016	37,982	△19,966	△52.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초순자산은 전년 대비 301억 7,600만원 증가한 379억 8,2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재정운영결과 576억 2,3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77억 9,900만원이 당기 기초순자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69억 800만원 증가한 645억 3,100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프로그램 순원가 63억 1,100만원, 관리운영비 11억 2,800만원, 비배분비용 5,100만원, 비배분수익 5억 8,200만원 증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 대비 432억 3,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IV. 성과보고서

1. 성과체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재정법」 제8조제2항 등에 따라 작성한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위 기관의 임무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로 국민의 정보주권을 책임진다’로 설정하였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1개)-프로그램목표(3개)-단위사업(5개)-성과지표(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과관리체계도〉

임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로 국민의 정보주권을 책임진다
비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	▪ 전략목표 I.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프로그램목표 I-1.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 프로그램목표 I-2.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 프로그램목표 I-3.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 성과를 제고한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2025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 성과계획서에 따라 2025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5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1개 전략목표(‘I.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의 달성률은 100%임.

〈전략목표 달성 현황〉

전 략 목 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실적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I.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487	지표 수	3	-
		달성/미달성	3/0	-
		달성률 ¹⁾ / 실적치 평균 ²⁾	100.0%/100.0%	-

주1) (달성지표 수÷전체지표 수)×100

주2) 해당 전략목표의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 목표의 실적 달성률((실적치÷목표치)×100) 평균값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로그램목표 I-1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의 성과지표로 ‘가명정보지원 플랫폼 서비스 이용 건수(건)’을 설정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운영,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검토, 법안 의견수용 도출 및 유관 부처와 적극적 협의 추진 등을 통해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다고 보고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로그램목표 I-2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의 성과지표로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율(%)’을 설정하고 국내·외 도메인 대상 주기적 모니터링, 온라인상 노출된 개인정보의 신속한 삭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다고 보고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로그램목표 I-3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한다’의 성과지표로 ‘개인정보 포털 이용자 수(명)’을 설정하고 캠페인, 체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접속자 유입 노력, 개인정보포털 통합 등 사용자 편의 개선 등을 통해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다고 보고함.

제2장 검토의견

1.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을 통하여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37억 1,400만원 중 36억 6,900만원(98.8%)이 집행되었고, 4,500만원(1.2%)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714	3,714	-	-	3,714	3,669	-	45	3,71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1,240	1,240	-	-	1,240	1,213	-	27	1,240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650	650	-	-	650	650	-	-	650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2,474	2,474	-	-	2,474	2,457	-	17	2,474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1031-301)

2) 검토의견 :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의 규모·대상 재검토 및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 중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은 주체로서 인식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의 접근배제(삭제 및 검색 제한)를 대행 및 지원하는 사업(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으로, 2025년 예산현액 6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동 사업을 통한 서비스(지우개 서비스)는 현재 30세 미만 국민이 19세 미만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용역사업자)이 게시판 운영 사업자 등에 접근배제를 요청하거나 신청자에게 삭제방법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 운영 절차 〉

절차	주요내용		
서비스 신청·접수 (국민→KISA)	○ 신청자격: 30세 미만 국민 누구나 ○ 지원대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사진·영상 등 ○ 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 ‘잊힐 권리’ 페이지에서 신청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 결정 (KISA)	○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매칭하여 게시물 유형별 조치방법, 자기게시물 입증에 필요한 보완 필요사항 등 상담·지원		
	구분	게시물 유형	조치방법
	유형1	탈퇴, 계정정보 분실, 게시물 삭제 권한 없음 등으로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어 접근배제 요청	접근배제
	유형2	본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제3자가 작성하거나, 복제한 경우	상담 지원
	유형3	본인 작성한 게시물이나 계정 등을 직접 삭제하기 원하는 경우로 계정(SNS프로필 포함)에 대한 조치 방법(복구, 삭제), 게시물 삭제 방법 등을 상담 및 안내받는 경우	상담 지원
	유형4	본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등이 제3자에 의해 불법유통되고 있는 경우	상담 지원

절차	주요내용
접근배제 등 요청 (KISA→사업자)	○ 신청인으로부터 접근배제 등의 요청 권한을 위임받은 KISA가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신청인을 대리하여 접근배제 등 신청 ○ 접근배제 등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블라인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접근배제 등 조치 실시
모니터링 및 결과안내 (KISA→국민)	○ 접근배제 등 요청 이후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보완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완 절차 이행 ○ 신청인이 신청 시 선택한 방법(문자, 이메일 등)으로 처리결과 통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처리 및 접근배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사업 도입 당시 인력 29명이 1인당 하루 평균 3건을 처리하여 월 1,740건, 연간 2만 880건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실제 처리(모든 상담 건수 포함) 건수는 2023년(8개월분) 1만 1,487건, 2024년 1만 5,665건, 2025년 1만 701건으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지우개 서비스의 연도별 처리 내역 >

(단위: 건, 명)

연도	접근배제 요청	임시조치 상담 (제3자 게시물)	직접 삭제	URL 부존재	개인 정보 미포함	신청 취소	보완 기간 만료	기타 상담	합계
2023년	2,021	875	2,290	298	2,222	192	2,235	1,354	11,487 (3,766)
2024년	4,839	1,080	3,249	94	2,068	288	2,737	1,310	15,665 (4,395)
2025년	1,819	474	2,782	99	2,903	183	1,327	1,114	10,701 (2,597)

주 : ()는 신청인 수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특히 실질적인 직접지원에 해당하는 접근배제 요청 건수는 2024년 4,839건 대비 2025년 1,819건(△62.4%)으로 감소하였고, 처리완료 건수는 4,231건 대비 1,699건(△59.8%)으로 감소하였음. 2023년에는 8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처리완료 건수가 1,785건으로 2025년보다 많았음.

< 지우개 서비스의 연도별 조치 결과 >

(단위: 건)

연도	접근배제 요청	처리완료	처리기간
2023년	2,021	1,785	236
2024년	4,839	4,231	608
2025년	1,819	1,699	12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는 사업 시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과거 게시물에 대한 누적 삭제수요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수요 추이와 실제 업무량을 토대로 인력 및 사업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가가 직접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지원할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업의 지원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²⁾를 작성·배포하여, 본인이 과거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

즉, 동 사업은 이용자에게 새로운 접근배제요청권을 부여한다기보다는 기존 권리의 행사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상담·대행³⁾하는 성격의 사업임.

○ 따라서 직접 권리 행사가 가능한 성인에 대해서까지 아동·청소년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⁵⁾.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기게시물의 접근배제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에 따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요 플랫폼 사업자(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 2024. 12.

3)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용역사업자)이 신청인에게 위임받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방식 또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함.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상대적으로 권리 행사 역량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음.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최초 사업 추진 시에는 신청 자격을 24세 미만으로 설정하였으나, 사업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함에 따라 2024년부터 신청 자격을 30세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음.

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5년 서비스 신청 및 처리 건수는 16세 1,910건, 15세 1,488건, 14세 1,437건 등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으나, 20~29세의 경우에도 2,899건으로 전체 1만 701건의 27.1%를 차지하고 있음.

〈 지우개 서비스의 연령대별 처리 현황 〉

(단위: 건, 명)

연도	11~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이상	계
2023년	146	1,292	1,702	1,232	1,035	925	591	4,564	11,487 (3,766)
2024년	638	2,392	2,494	2,757	2,262	1,328	518	3,276	15,665 (4,395)
2025년	585	1,437	1,488	1,910	1,253	782	347	2,899	10,701 (2,597)

주 : ()는 신청인 수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셋째, 자기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지원에 집중된 현행 사업 지원 체계를 제3자 게시물 등 정보주체가 직접 조치하기 어려운 분야로 확대·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3자 게시물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의 글·사진·영상 등을 게시하는 셰어런팅, 제3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난·비방 등을 게시하는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되며, 현행 사업에서도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⁶⁾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2025년 제3자 게시물 관련 임시조치 상담은 474건이었음.

6) 제3자가 올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하여 최대 30일 동안 해당 게시물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 도입 당시 향후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배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자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주체의 권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접근배제 지원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자기게시물은 본인 스스로 플랫폼에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반면, 제3자가 게시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직접 삭제할 권한 자체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자 게시물 중 셰어런팅, 사이버폭력, 자기게시물의 무단 복제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유형을 구분하여 현행 법령상 임시조치 등이 가능한 유형에 대해서는 단순 상담 이상의 임시조치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그 외 유형에 대해서는 플랫폼과의 협력, 제3자와의 협의 대행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접근배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⁷⁾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 현액 5억 3,100만원 중 4억 9,100만원(92.5%)이 집행되었고, 4,000만원(7.5%)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 산
	예 산 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31	531	-	-	531	491	-	40	15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2025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도 중에 직접수행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⁸⁾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출연금 예산이 일반용역비(4억 2,000만원), 일반연구비(7,000만원), 일반수용비(4,100만원)로 변경되어 집행되었음.

7)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1031-304)

8)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과도한 출연사업 비중을 축소할 필요성 제기

〈 2025년 예산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 편성		2025년 예산 전용 후				
비목	예산	비목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내용
사업출연금 (350-02)	531	일반수용비 (210-01)	41	11	30	- 인쇄 및 회의수당
		일반용역비 (210-14)	420	417	3	-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지원 용역 - 개인정보보호 기술 전시회 부스 설치
		일반연구비 (260-01)	70	64	6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개선방안 연구
		계	531	491	4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검토의견 :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에 대한 주의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이전까지는 동 사업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개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직접 지원하였으나, 2025년에는 용역을 통해 기술개발 자문, 컨설팅 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에 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8월에 수행기관(서울테크노파크)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 추진 경과 〉

일자	주요 내용
2025. 1. 16.	출연사업의 직접수행 전환 및 예산 내역변경
2025. 6.	사업계획 확정
2025. 8. 25.	수행기관(서울테크노파크)과 계약 체결
2025. 9. ~ 12.	기술개발 컨설팅 및 시제품 성능 평가·검증 상시 운영
2025. 11.	기술개발 컨설팅 및 시제품 실증 지원 기업 선정
2025. 12.	사업 종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동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과의 계약이 지연되면서 기술개발 자문, 컨설팅 및 시제품 실증,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이 미흡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 동 사업을 통한 월별 기업에 대한 자문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114건 중 81건(71.1%)이 12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10회 이상의 자문을 받은 5개 기업⁹⁾의 경우 11~12월 중 1~3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9) 당초 서울테크노파크의 1, 2차 기업모집 공고에 따르면 기업별 최대 3회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3차 모집 공고(11.20.)부터 기업별 최대 10회까지 지원

〈 2025년 월별 기술개발 및 시제품 성능 평가·검증 자문 실적 〉

(단위: 건)

구분	기술개발	시제품	계	비고
10월	12	-	12	1건당 자문료 : 30만원
11월	21	-	21	
12월	59	22	81	
합계	92	22	114	

(자료: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재구성)

〈 2025년 자문 횟수 상위 5개 기업의 자문 기간 〉

(단위: 건)

구분	기술개발	시제품	계	자문 기간
A사	10	3	13	2025. 12. 4. ~ 12. 19.
B사	10	-	10	2025. 11. 20. ~ 12. 8.
C사	10	-	10	2025. 12. 19. ~ 12. 26.
D사	10	-	10	2025. 12. 9. ~ 12. 26.
E사	-	10	10	2025. 12. 11. ~ 12. 24.
계	40	13	53	

(자료: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재구성)

또한, 컨설팅(기업별 최대 500만원 지원) 및 시제품 실증(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 지원을 위한 기업 선정 통보는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실제 지원이 가능하였던 기간은 12월 말까지 1개월에 불과하였음.

〈 2025년 컨설팅 및 시제품 실증 지원기업 선정 경과 〉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서류접수	9. 19. ~ 10. 15.	10. 21. ~ 11. 5.
서면평가	10. 20. ~ 10. 24.	11. 6. ~ 11. 10.
발표평가	10. 31.	11. 14.
선정통보.	11. 10.	11. 24.
선정결과	컨설팅 3개사 시제품 실증 2개사 선정	컨설팅 4개사, 시제품 실증 2개사 선정

(자료: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재구성)

판로개척 지원의 경우에도 컨설팅 및 실증 지원 기업이 최종 선정된 직후인 12월에 2회의 소규모 단발성 세미나 개최에 그쳤음.

〈 2025년 판로개척 지원 행사 개최 현황 〉

(단위: 건)

행사명	일시	참여인원	행사 내용
판로개척-투자유치 역량강화 세미나	2025. 12. 3. (13:00~17:00)	34명	- 모의 IR 발표 - 상담 (15:00~17:00)
개인정보보호 테크비즈 파트너링	2025. 12. 10. (13:00~17:00)	38명	-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공공조달 진입 전략 안내 등 - 상담 (15:50~16:50)

(자료: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재구성)

□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자문, 컨설팅 및 실증은 기술적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 후 대안을 검토·반영하여 그 결과를 다시 확인·보완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판로개척 지원도 기업에 대한 단순 투자처 및 수요처 소개에 그
치기보다는, 기술개발 자문, 컨설팅 및 실증 지원과 연계하여 일정 수
준의 사업화 역량을 확보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매 및 투자 유치 전략
을 충분히 수립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2025년에는 사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지원이 단기간에 집중·종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이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연계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수행기관 선정과 참여기업 지원
에 필요한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일정을 수립함으로써
사업화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
요가 있음¹⁰⁾.

10) 동 사업 중 일반용역비를 통한 사업화 지원은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유사중복)으로 2026년 예산에는 미반영됨.

3.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¹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 감독기관과 협력하고,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강화 추세에 따른 국내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3억 7,600만원 중 23억 5,500만원(99.1%)이 집행되었고, 2,100만원(0.9%)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2,376	2,376	-	-	2,376	2,355	-	21	1,442
-개인정보보호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1,746	1,746	-	-	1,746	1,746	-	-	571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315	315	-	-	315	315	-	-	552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15	315	-	-	315	294	-	21	31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내역사업 중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의 동등성 인정 제도¹²⁾ 및 국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11)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1031-305)

12) 동등성 인정 : 역외의 국가(국제기구)가 국내(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두고 있는지 확인·인정하는 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임.
동등성을 인정받은 대상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절차 없이 역내(국내) 이

(Cross Border Privacy Rules, CBPR)¹³⁾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억 8,000만원 중 1억 7,900만원(99.9%)이 집행되었고, 100만원(0.1%)이 불용되었음.

2) 검토의견: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비의 기본경비성 경비 집행 주의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부터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사업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¹⁴⁾과 관련된 심의·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¹⁵⁾의 운

전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이전 및 처리가 가능함.

13) 국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Global CBPR) :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국제 인증제도(2025년 6월 2일부터 공식 시행)로서, 기존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APEC CBPR을 전 세계로 확장한 제도임.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2.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영을 지원하고 있음.

- 국외이전전문위원회¹⁶⁾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에 대한 평가, ② 동등성 인정을 위한 검토 등을 수행하는데, 현재는 동등성 인정(EU)을 위한 검토 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평가 등에 대하여 검토한 사례는 없음(2026년 7월 말 기준).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 운영 관련 예산은 위원 수당 등 회의체(연 12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회의장 임차(연 4회)를 위한 임차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3,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의 연도별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 예산
	예산	이·전용 등	예산 현액	결산	예산	결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 운영	34	△8	26	22	35	35	25
- 일반수용비	18	-	18	18	19	19	20
- 임차료	16	△8	8	4	16	16	5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그런데, 2026년 7월 기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3회, 2025년 2회, 2026년 0회로 총 5회에 불과하며,

16) 2024년 1월 30일 최초 구성

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1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학계 2명, 법조계 3명, 산업계 2명, 시민단체 1명, 기타(한국인터넷진흥원) 1명

특히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하여 외부 회의장소를 임차한 사례는 2025년 12월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결과 공유를 위한 회의 1건(임차료 : 1.9백만원)임.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2024년 및 2025년 회의 개최 실적 및 장소 >

일시	장소	주요 안건
2024. 1.	개인정보위 청사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및 운영세칙 의결
2024. 10.	개인정보위 청사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여부 중간 평가
2024. 11.	개인정보위 청사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평가 의결
2025. 7.	서면	유럽연합(EU) 동등성 인정 검토 보고서에 대한 서면 검토
2025. 12.	더플라자	-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결과 공유, - 국외이전 제도개선 방향 검토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집행잔액 중 대부분을 동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일반수용비의 경우 외국어 회의 지원 및 AI 서비스 구독 등 국제협력담당관 운영 경비 및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GPA(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 총회¹⁷⁾ 운영계획서 인쇄비 지급 등에 1,270만원이 집행되었고,

17) 2025년 제47차 GPA 서울 총회 개최 (내역사업명: '국제 컨퍼런스 운영'(14억원))

임차료의 경우 12월 국제협력담당관실 워크숍¹⁸⁾ 등에 1,03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 2025년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의 목적 외 집행 사례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집행액	주요 내용
2024	일반수용비	10.4	- 문서 번역, 외국어 회의 지원 및 AI 서비스 구독
2025	일반수용비	8.4	- 외국어 회의 지원 및 AI 서비스 구독
		4.3	- GPA총회 운영계획서 인쇄비 지급
		12.7	합계
	임차료	3.7	- 국외출장 계기 차량 임차
		6.6	- 국제협력담당관실 워크숍
		10.3	합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동 사업 예산을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성이 낮은 기본경비성 경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8) 전문가의 GDPR 주요 집행 사례, 개인정보 보호법 최신 판례 등 관련 세미나 포함

4.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¹⁹⁾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관리·감독 등 제도 운영, 가명정보 처리 및 안전성 검증,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5억 6,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 산
	예 산 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안 전 한 데 이 터 활 용 지 원	3,564	3,564	-	-	3,564	3,564 [3,474]	-	-	6,456
- 가명정보 제도 운영	391	391	-	-	391	391 [371]	-	-	391
- 가명처리 기술 지원	2,137	2,137	-	-	2,137	2,137 [2,102]	-	-	5,665
- 가명정보 활용 지원 시스템 운영	1,036	1,036	-	-	1,036	1,036 [1,001]	-	-	4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① 가명정보 제도 운영, ② 가명처리 기술 지원, ③ 가명정보 활용 지원 시스템 운영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전액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9) 세부사업: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2) 검토의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 내실화 필요

□ ‘가명정보 제도 운영’ 내역사업에서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함)의 신규 지정·재지정 심사 및 관리·감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식별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음.²⁰⁾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²¹⁾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²²⁾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이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한된 목적 하에 안전하게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20)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2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생략)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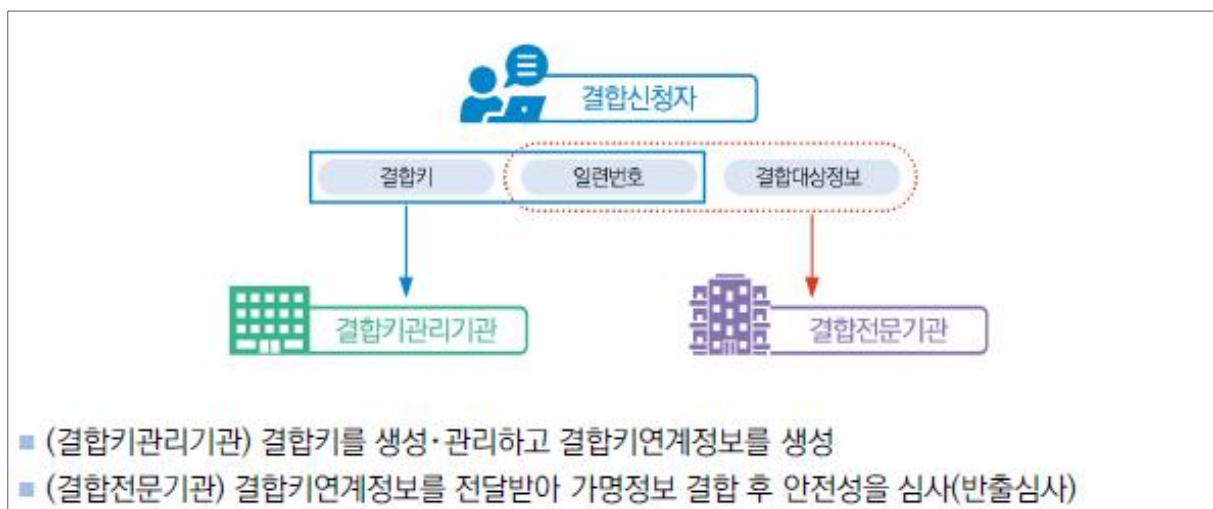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생략)

제28조의7(적용범위) (생략)

○ 가명정보 제도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서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개인식별 위험성이 비교적 높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²³⁾²⁴⁾

- 가명정보 결합은 일반적으로 동일인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결합키를 안전한 방식으로 생성하고, 해당 결합키를 기반으로 가명정보를 결합한 뒤, 결합키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단일 기관이 결합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처리하지 않도록 역할을 분리하여 결합 과정에서 누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설계한 것임.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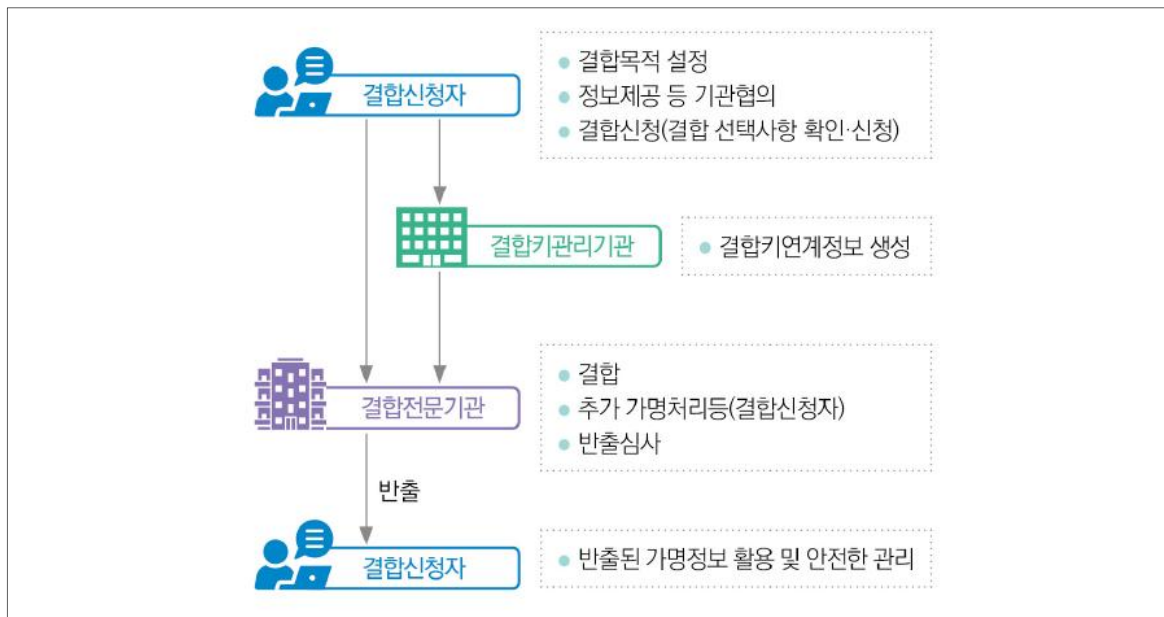
(자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23)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24) 단일 기관·기업 내 부서 간 결합 등 동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결합 수행이 가능함.

- 구체적인 가명정보 결합 절차는 ① 결합신청자의 결합 신청, ② 결합기관관리기관의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③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④ 결합신청자의 반출정보 활용 및 안전한 관리 단계로 진행됨.

〈가명정보 결합 절차〉



(자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결합기관관리기관은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지원을 위해 결합키 생성 협의 및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관련 고시²⁵⁾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음.
-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반출심사를 거쳐 결합정보의 반출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관의 상황에 따라 가명처리 컨설팅 및 결합·반출정보의 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음.

25)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결합기관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그런데 2020년 8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된 후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23개였던 결합전문기관은 2024년 21개, 2025년 19개, 2026년 6월말 기준 18개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신규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연도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현황〉

(단위: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말
신규지정	5	14	3	2	1	-	-
재지정	-	-	-	5	10	2	-
지정취소	-	-	-	1	3	2	1
합계	5	19	22	23	21	19	1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현재까지 지정이 취소된 결합전문기관은 총 7개로, 이 중 4개 기관은 지정취소 요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고, 3개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로 지정이 취소되었음.
- 이 중 6개 기관이 민간기관이며, 특히 지정취소를 요청한 4개 기관은 모두 민간기관으로 나타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현황〉

연번	지정부처	지정기관	소재지	분류	최초지정일 (재지정일)	지정 취소일	지정취소 등 사유
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강원 원주	공공기관	2020. 10. 29. (2023. 10. 29.)	-	
2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 원주	공공기관	2020. 10. 29. (2023. 10. 29.)	-	
3		국립암센터	경기 고양	공공기관	2021. 9. 1. (2024. 9. 1.)	-	

연번	지정부처	지정기관	소재지	분류	최초지정일 (재지정일)	지정 취소일	지정취소 등 사유
4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	공공기관	2020. 11. 24. (2023. 11. 24.)	-	
5		한국국토 정보공사	전북 전주	공공기관	2023. 11. 1.	-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가데이터처 (舊. 통계청)	대전 서구	부처	2020. 11. 27. (2023. 11. 27.)	-	
7		삼성SDS	서울 송파	민간	2020. 11. 27. (2023. 11. 27.)	-	
8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서울 마포	공공기관	2021. 6. 30. (2024. 6. 30.)	-	
9		롯데이노베이트	서울 금천	민간	2021. 6. 30. (2024. 6. 30.)	-	
10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서울 광진	공공기관	2022. 4. 11. (2025. 4. 11.)	-	
11		국세청	서울 종로	부처	2022. 4. 21. (2025. 4. 21.)	-	
12		한국도로 교통공단	강원 원주	공공기관	2024. 2. 29.	-	
13		케이씨에이	서울 서초	민간	2021. 6. 30.	2024. 6. 30.	지정 취소요청
14		한국정보인증	경기 성남	민간	2021. 11. 15.	2024. 6. 30.	지정 취소요청
15		신세계아이앤씨	서울 중구	민간	2021. 12. 13.	2023. 5. 12.	지정 취소요청
16		LG CNS	서울 강서	민간	2022. 7. 5.	2025. 7. 4.	유효기간 만료
17		CJ 주식회사	서울 중구	민간	2023. 2. 2.	2026. 2. 1.	유효기간 만료
1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경기 성남	공공기관	2021. 1. 8. (2024. 1. 8.)	-	
19		(주)더존비즈온	강원 춘천	민간	2021. 1. 8. (2024. 1. 8.)	-	
20		SK주식회사	경기 성남	민간	2021. 1. 8. (2024. 1. 8.)	2025.10.28.	지정 취소요청
21		비씨카드 주식회사	서울 중구	민간	2021. 10. 6. (2024. 10. 6.)	-	
22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서울 중구	공공기관	2021. 10. 6. (2024. 10. 6.)	-	
23	교육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대구 동구	공공기관	2021. 6. 1. (2024. 6. 1.)	-	
24	기후에너지 환경부	한전KDN	전남 나주	공공기관	2021. 9. 6. (2024. 9. 6.)	-	

연번	지정부처	지정기관	소재지	분류	최초지정일 (재지정일)	지정 취소일	지정취소 등 사유
25	행정안전부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대전 유성	부처	2021. 12. 28.	2024. 12. 27.	유효기간 만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 결합전문기관의 경우 지정 기준 유지를 위해 전담인력·보안시설 및 시스템 운영 등 지속적인 고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지정기준 유지비 대비 결합업무를 통한 수익·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기관이 결합전문기관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가명정보 결합 수요와 참여 유인이 확보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실적을 살펴보면, 연도별 전체 실적은 2021년 13건에서 2022년 24건, 2023년 35건, 2024년 39건, 2025년 44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관별 실적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결합전문기관별 가명정보 결합 실적〉

연번	지정기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월말	합계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2	4	5	6	-	18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5	9	16	17	4	54
3	국립암센터	-	-	3	2	3	1	9
4	한국도로공사	1	2	-	-	2	-	5
5	한국국토정보공사			-	-	-	-	-

연번	지정기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월 말	합계
6	국가데이터처	2	-	2	3	-	-	7
7	삼성SDS	3	1	-	-	1	-	5
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	-	2	-	2
9	롯데이노베이트	-	1	-	-	-	-	1
1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4	4	3	-	11
11	국세청		2	2	2	4	-	10
12	한국도로교통공단				-	-	-	-
13	케이씨에이	-	-	-	-			-
14	한국정보인증	-	1	-	-			1
15	신세계아이앤씨	-	-	-				-
16	LG CNS		-	2	1	-		3
17	CJ 주식회사			-	1		-	1
18	지능정보사회진흥원	3	5	4	3	5	-	20
19	(주)더존비즈온	-	-	-	-	-	-	-
20	SK주식회사	-	1	3	-	-	-	4
21	비씨카드 주식회사	-	1	-	-	-	-	1
2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3	1	1	-	-	5
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	1	-	1
24	한전KDN	-	-	1	1	-	-	2
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	-	-	-	-
합계		13	24	35	39	44	5	16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1년부터 2026년 5월말까지 총 160건의 결합 실적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적이 54건으로 전체의 약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상위 3개 기관의 결합 실적이 총 92건으로 전체의 57.5%에 해당함.
- 반면, 각 기관의 지정·운영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합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6개이고, 누적 실적이 1~2건에 불과한 기관이 7개로, 상당수 결합전문기관의 결합 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체 가명정보 결합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결합전문기관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실적도 일부 기관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결합전문기관의 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실제 가명정보 결합 수요를 발굴하고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 수의 감소와 기관별 결합 실적 편중의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야별 가명정보 결합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요기관과 결합전문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²⁶⁾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하고 전 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²⁷⁾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60억 4,500만원 중 59억 7,800만원(98.9%)이 집행되고, 6,700만원(1.1%)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6,045	6,045	-	-	6,045	5,978 [5,929]	-	67	6,17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었고,²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

26) 세부사업: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1032-304)

27) 정보주체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

28)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 다.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²⁹⁾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요구, 전송이력
확인 및 전송 철회 등의 권리를 한 곳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한편, 공공·금융·의료 등 기존 마이데이터 분야와 신규 분야를
연계하고 참여기관의 등록·관리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
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
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2. 「지방세기본법」 제86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
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철회 내역

3.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체적으로 동 플랫폼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및 전송이력 조회,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카탈로그, 사용자 및 참여기관 인증·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구축되었음.

2) 검토의견: 플랫폼 활용도 제고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동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2024년 1차로 전 분야 전송요구 이력 관리, 참여기관 관리 체계 및 클라우드 인프라 등 기반을 구축하여 2025년 3월 13일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5년에는 본인다운로드 등 전송요구권 처리 고도화, 전송비용 산정 및 개인맞춤 기능 구현, 신규 분야 연계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에는 기능 고도화, 개인정보 부당전송 탐지체계 구축, 플랫폼 운영환경 최적화 등을 수행하고 있음.

〈연도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예산 집행현황 및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주요 내용
2024년 (1차)	7,546	7,446	100	- 전 분야 전송요구 이력 관리 - 참여기관 관리 체계 구현 - 클라우드 인프라 등 기반 구현
2025년 (2차)	3,832	3,765	67	- 본인다운로드 등 전송요구권 처리 고도화 - 전송비용 산정 및 개인맞춤 기능 구현 - 신규 분야 연계 확대 및 인프라 추가
2026년 (3차)	2,750	(집행중)		- 본인정보전송요구권 기능 고도화 - 개인정보 부당전송 탐지체계 구축 - 플랫폼 운영환경 최적화
계	1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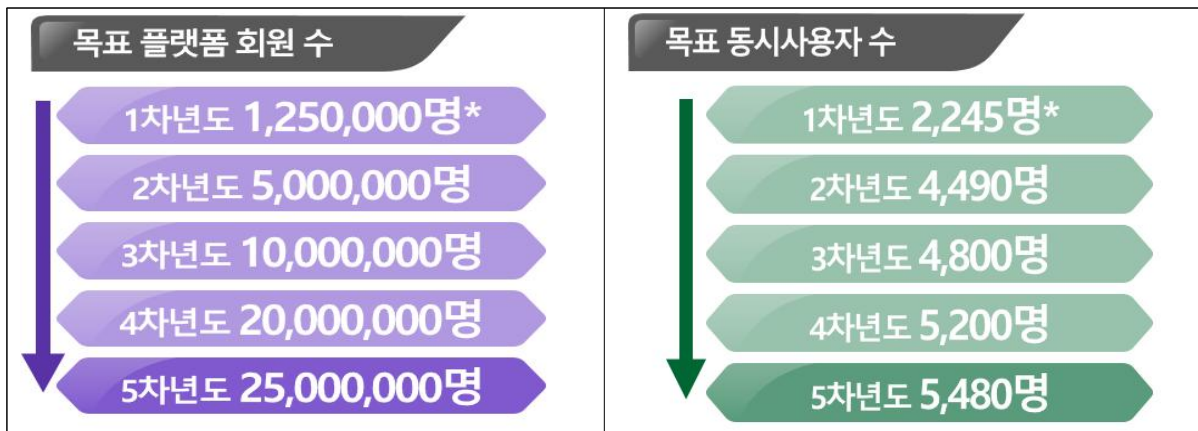
주) 플랫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제외하고, 플랫폼 구축 사업비에 대해서만 작성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년 수립된 ISP에서는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규모 및 소요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 전체 인구의 2.5%를 초기 플랫폼 회원 확보율로 가정하여 플랫폼 회원 수를 1차년도 125만명, 2차년도 500만명 등으로 산정하였고, 선행 마이데이터 및 타 분야 사용 예상치를 기반으로 동시 사용자 수를 1차년도 2,245명, 2차년도 4,490명 등으로 산정하였음.

○ 이는 플랫폼의 성과목표라기보다는 시스템 용량 및 소요예산 산정을 위한 수요 추정치로 볼 수 있으나, 당초 상당한 규모의 이용 수요를 전제로 플랫폼 구축이 계획되었음을 보여줌.

〈ISP상 플랫폼 규모 산정을 위한 예상 회원 수 및 동시사용자 수〉



주1) 목표 플랫폼 회원 수: 총 인구수 51,414,281명(2023년 3월 기준) 중 초기 플랫폼 회원 확보율 2.5%로 설정하여 예상 회원수 1,250,000명으로 설정

2) 목표 동시사용자 수: 선행 마이데이터(공공, 금융, 의료) 및 타 분야 사용 예상치 기반 동시사용자 수 산정

(자료: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23. 7.)

□ 그런데 2025년 3월 13일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연말까지 일반회원 가입자는 1,875명, 기관회원 가입기관은 110개이고, 일반회원 접속자 수는 11만 6,649명, 기관 접속자 수는 2만 2,991명으로 나타나는 등, 서비스 운영 초기의 회원가입 및 이용실적이 당초 ISP에서 시스템 규모 산정을 위해 전제한 이용 수요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월별 회원가입 및 접속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5년	회원 가입	일반			98	157	118	85	75	156	194	116	189	687	1,875
		기관			18	17	15	9	8	9	15	6	2	11	110
	접속자 수	일반			3,622	10,852	12,524	10,667	9,168	13,365	16,789	10,788	9,979	18,895	116,649
		기관			-	9,499	2,640	1,890	1,080	2,087	1,795	1,825	976	1,199	22,991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6년	회원	일반	358	213	1,586	2,767	3,670	3,901						12,495
	가입	기관	8	6	12	38	28	48						140
	접속자	일반	12,110	8,496	18,652	53,991	20,723	53,410						167,382
	수	기관	1,060	1,104	1,609	1,698	1,549	2,266						9,28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플랫폼의 주요 기능별 이용실적을 보면,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57만 2,875건 중 API³⁰⁾ 전송 건수가 43만 5,426건으로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 API 전송은 개인정보의 전송을 지원하는 동 플랫폼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나, 이를 제외한 전송요구 이력조회·정보 재조회·상세조회·금융분야 전송요구 이력조회·철회 등 정보주체가 플랫폼에서 직접 이용하는 기능의 이용실적이 총 13만 7,449건(24%)으로 나타나고 있음.³¹⁾

○ 앞에서 살펴본 회원가입 및 접속 실적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플랫폼 주요 기능 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0)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참여기관 간에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미리 정의된 표준화된 전송규격 및 절차

31)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PI 전송 기능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조회, 철회 등의 요구 시 참여기관에서 플랫폼으로 실지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기능별 이용실적 57만 2,875건을 전체 플랫폼 직접 이용건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API 전송 건수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조회 등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간 전송·처리 실적으로서 정보주체의 직접적인 이용행위와 1:1로 대응하는 지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정보주체의 직접 이용건수와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월별 이용실적〉

(단위: 건)

구분	목록조회	정보 재조회	상세조회	금융	철회	API 전송 건수	소계
'25년	3월	4,326	-	-	809	42	5,177
	4월	27,680	9,197	1,675	18,483	38	82,329
	5월	9,202	8,040	2,885	1,162	25	79,380
	6월	4,480	4,145	1,250	335	8	36,297
	7월	3,050	2,849	1,096	201	33	24,137
	8월	2,682	2,242	619	440	24	32,818
	9월	5,446	4,578	1,150	868	38	75,742
	10월	2,062	1,804	369	258	21	26,320
	11월	1,898	1,683	487	215	23	26,370
	12월	4,208	3,730	1,090	478	25	52,033
	소계	65,034	38,268	10,621	23,249	277	435,426
'26년	1월	2,362	2,169	776	193	26	47,964
	2월	1,944	1,808	601	136	31	78,723
	3월	5,730	4,451	815	182	28	72,176
	4월	31,236	21,566	1,232	179	25	52,457
	5월	9,914	8,853	1,382	221	12	55,294
	6월	11,546	8,639	1,714	188	25	63,043
	소계	62,732	47,486	6,520	1,099	147	369,657
	소계	487,766	329,754	17,141	24,348	424	805,083

주1) 목록조회: 전송요구 이력조회

2) 정보 재조회: 전송요구 이력조회 내 최신정보 재조회

3) 상세조회: 전송요구 이력 상세 조회

4) 금융: 금융분야 전송요구 이력조회 실행

5) 철회: 전송요구권 철회

6) API 전송건수: 중계시스템(통신, 의료, 금융, 공공)과 API 전송내역(제공/요청) 건수

('25.10~11월은 국자원 화재로 일부 영향)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편, 2026년 들어 회원가입 및 접속 실적이 증가하고 주요 기능의 이용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이용증가가 정보주체의 실제 전송요구권 행사 및 플랫폼 주요 기능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및 참여기관별 회원가입·접속 실적과 주요 기능별 이용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플랫폼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안내·홍보, 참여기관 확대 및 기술지원 등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